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94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이원택·김한규·이용우

임미애·주철현·윤준병

위성곤 • 문금주 • 이병진

송옥주·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농장주·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에게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농장주들이 27년 2월까지 폐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년의 기간을 연장하고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개사육농장 등이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폐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정당한 보상' 규정이 없고, 보상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상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 상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개사육농장 등의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이루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2·제12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폐업 등에 필요한"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용과 대상·기준"을 "대상·기준"으로 한다.

제11조의2 ·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폐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

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우

- 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우
- 3. 해당 개사육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우영한 경우
-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그 밖에 폐업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생계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 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의3(조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및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 제20195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이행계획서를 제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 등 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② -----대상 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폐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 정된 자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 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 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 급할 수 있다.
-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건축물인 경우
- 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 오
-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그 밖에 폐업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신 설>

<신 설>

법률 제20195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
조, 제2조, 제7조, 제9조,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

로 정한다. 제12조의2(생계비 지원)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 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 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서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 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조세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 품접객업자의 폐업 및 전업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 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 제20195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u>3년</u> 이 경	<u>4년</u>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